

목호노인종합복지관 이용규칙

- 제 1조**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은 복지관이 정한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,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 2조**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소중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전기나 수도물 등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 3조** 복지관내에서 항상 회원증을 소지해야 하며,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 4조** 복지관내에서 음주, 도박, 흡연 등의 질서문란 행위를 금한다.
- 제 5조** 복지관 이용자 간에 상호비방, 욕설, 싸움을 금하며 상호간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.
- 제 6조** 복지관내에서 친목계 등의 사조직 또는 유사단체를 조직하지 않으며, 금품 수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제 7조** 복지관내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선전 또는 물품 판매를 비롯한 영리활동을 금한다.
- 제 8조** 복지관내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선교 행위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는다.
- 제 9조** 복지관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광고물 부착, 배포를 금한다.
- 제10조** 전염병 소지자 및 건강상 이에 노출이 위험한 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.
- 제11조** 프로그램 이용도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에 대하여 회원 스스로 책임을 지며, 물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12조** 복지관의 강사 또는 회원, 직원에게 무례한 언사 및 행위로 다른 회원들의 이용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.
- 제13조** 복지관 관장은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어르신 분들에게 복지관 이용을 금지 시킬수 있다.

